

의안번호	2204408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 계 번호	24B41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1조의2 제1항(원자력안전 관리부담금 등)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1.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 기존은 제1호(수출입 업무 신청자는 제외)의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납부 대상자 규정을 동 법률로 옮겨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일부 조문 수정	재량규정
2	안 제111조의3 제2항(강제징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기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¹⁾ 를 준용하여 징수 하던 가산금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111조의3 제5항(강제징수) 신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11조의4 제2항(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원자력안전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계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미첨부 근거 등)
1	안 제111조의2제1항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미대상: 개정안의 조문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현행에 비해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 등을 통해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상을 법률에 정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의 변경이 없음
2	안 제111조의3제2항 (강제징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이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 이내로 한정할 경우 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부담금납부의무자의 미래 부담금 미납 예상 금액의 예측이 어려워 현 시점에서는 수입의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3	안 제111조의3제5항 (강제징수) 신설	미대상: 개정안은 천재지변 및 재난 등에 따라 부담을 겪는 사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는 감면 또는 감경 조항이 아닌 납부 시기의 유예이므로 기금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11조의4 제2항(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의 재원 및 용도)	미대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사업에 개정안의 정책수립, 안전문화 등의 사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성격임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2. 상세 사유

□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1조의2제1항)

-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²⁾ 실제 납부의무자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문 상 납부의무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신청한 자”를 법률 규정에 포함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기관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업무 위탁과 관계없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문이 개정되어도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는 변동이 없음

[표 1] 개정안 상 부담금 납부의무자 변동

현행	개정안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³⁾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련 또는 수출입 <u>요건확인을 신청한 자</u> ,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주: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의 원자력사업자는 아래 [표 2]의 납부의무자 참고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3)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계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진단, 제45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표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납부의무자 비교(개정안 제1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조문	납부의무자	
현 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	1. 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2. 승인 관련 심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3. 교육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4. 훈련 평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5. 검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개 정 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원자력사업자	가. 발전용 원자로 건설허가 받은 자	한국수력원자력
		나.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받은 자	
		다. 연구용 원자로 건설허가 받은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라. 연구용 원자로 운영허가 받은 자	
		마.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현재 없음)
		바.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받은 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을 받은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아.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 받은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자.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받은 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소야그린텍, 그린피아기술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산금 징수 한도 설정(안 제111조의3제2항)

- 개정안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된 부담금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부과하던 가산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과도한 가산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2022.1.)’의 권고안에 따라 연체금 최고한도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시를 준용한 것임
- 현행 가산금 부과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은 납부금액의 3%, 증가산금은 최대 5년까지 매일 0.022%를 부과함
 - 현행 기준으로 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최대치는 미납 부담금의 43.15%이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미납 부담금의 20%임

[표 3]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최대한도

(단위: 원)

구분		원금(예)	가산금		가산금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합계	가산금 비율
현행	최대 (5년)	3,300,000	3%	99,000	0.022%(일)	1,324,950	4,723,950	43.15%
개정안	최대 (20%)		최대 20%		660,000		3,960,000	2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가산금 부과 및 미수납액의 변화가 큰 편이고, 향후에도 부담금 미납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바탕으로 가산금 부과액과 미수납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 따라 가산금의 징수 한도를 미납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할 경우 포기하게 되는 가산금 부과액과 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2019년 부과한 1,259만원의 가산금 중 664만원이 미수납 상태이고, 2020년에 가산금을 360만원 부과하고 243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21년에는 365만원을 부과하고 319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표 4】 최근 5년 가산금 부과·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부과금액*	수납연도	금액
2019	12,588,090	2019	378,490
		2020	1,130,410
		2022	371,000
		2023	4,068,000
		미수납	6,640,190
2020	3,601,540	2020	1,111,490
		2021	57,310
		2022	170
		2023	170
		미수납	2,432,400
2021	3,652,600	2021	325,180
		2022	112,490
		2023	29,600
		미수납	3,185,330
2022	529,100	2022	346,100
		2023	21,600
		미수납	161,400
2023	772,320	2023	605,880
		미수납	166,440

주 1) 부과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중)가산금 전체 포함

2)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증가산금 고지서 발급 등 지속 관리중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부담금 납부 유예(안 제111조의3제5항 신설)

- 개정안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는 조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2022.1.)’에 따른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의 상황 시 구제 규정이 없는 36개 법령(「원자력안전법」 포함)에 대하여 감면·감경·납부유예 중 최소 1개 이상

을 마련하도록 권고

- 개정안의 조항은 부담금의 감면 또는 감경 조항이 아닌 납부 시기의 유예이므로 이로 인해 기금 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안전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추가(안 제111조의4제2항)

- 개정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사업에 개정안의 정책수립, 안전문화 등의 사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기금의 추가지출 없이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성격임

【표 5】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 -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진관측망 구축, 국내 고유 원자력규제기반 조성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 국가방사선 안전교육 훈련 강화, 방사선안전 이해확산 - 수출입 요건 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록 관리 -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방사선규제정보 분석 및 관리
원자력안전규제	- 가동·건설 원전,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 심·검사 수행
방사선 안전규제	- 방사성동위원소, 핵물질 등에 대한 심·검사 및 관련 규제기준·검증기반 마련 -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시설 등에 대한 심·검사, 사용후핵연료 규제 기준지침 수립 - 원자력사고 조기탐지, 비상대응 기술지원, 환경방사능조사 등 -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원자력통제 규제이행 및 원자력통제 법정교육 - 비상진료 심·검사, 방재훈련 실시·평가, 방사선영향상답소 등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피폭과 질병과의 관계 조사
기금운영비	- 원자력기금의 운용·평가·성과관리 등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